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	87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제6653호, '02.2.24)시행 ('03.7.1),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03.7.28)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폐정67511-949호, '03.9.3)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재판기의 1회용품, 소형 종이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나.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 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통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
- 라.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
- 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

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

사.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입법예고 필(2003.11.28), 규제심사 대상아님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의무가 있는 평창군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태료의 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차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은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로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범위)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상제공 하는 행위를 포함함)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cm²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사용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소신고접수 및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①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액된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반과태료처분및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잡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운용규정)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0	30	50	3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평창군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평 창 군 수 (인)</p>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성 명: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평창군수 (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 월 .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계 호

수 신

발 신 평 창 군 수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계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고지 서번호	③과태 료처분 통지일	④독촉 장발부 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 료납부 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할 것

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상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평창군수 귀하

결 위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년 월 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도 군 읍·면 번지
③ 위 반 종 별 :
④ 상 황 설 명 :
⑤ 증 거 물 등 확 보 여 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 타 참 고 사 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평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u>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u>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위반행위	일시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p>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원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봉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원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p>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

(개인 봉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關係法令拔萃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